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서왕진 · 김준형 · 황운하
김재원 · 이해민 · 강경숙
차규근 · 박은정 · 정춘생
신장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되어야 함.

그런데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.

이에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,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,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4조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제1항 중 “그 증명자료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”를 “자격,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2. 측정지점의 작업 전·후 사진
3.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
4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
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흘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석면농도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p>③ (생 략)</p>	<p><u>내에 침전된 분진을 흘날려 비 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	---